

사랑과 정성을 다해 모시는  
소나무요양원 입니다



블로그 <https://blog.naver.com/sonamusilver1>  
전화번호 032-529-0085. FAX 032-517-5579.  
인천시 부평구 평천로142번길 50 (청천동)

 소나무요양원



안녕하십니까, 소나무요양원에 오신걸 환영합니다. 소나무요양원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계신 어르신들에게 보건, 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회복과 사회적 재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가족 기능의 강화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되었습니다.

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화된 프로그램과 전문서비스 및 양질의 영양공급, 건강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.

또한 공동생활을 통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적응력을 향상시키며 심신의 안정감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부여함으로써 어르신 및 부양가족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소나무요양원 직원일동

### ♣. 기관 상세 정보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기관명    | 소나무요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설치일자    | 2013. 02. 15  |
| 대표자    | 한효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기관기호    | 12823700037   |
| 급여종류   | 노인의료복지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입소정원    | 43명           |
| 블로그    | <a href="https://blog.naver.com/sonamusilver1">https://blog.naver.com/sonamusilver1</a> |         | 협력의료    | 한림병원<br>나은병원  |
| 전화번호   | 032) 529-008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팩스번호    | 032) 517-5579 |
| 주 소    | 인천시 부평구 평천로142번길50(청천동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|
| 비급여 항목 | 식사재료비+간식비(1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8,000 원 |               |
|        | 상급침실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없음      |               |
| 시설규모   | 건물면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2.26㎡ | 대지면적    | 222.80 ㎡      |

### ♣. 시설/ 설비 현황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하1층 | 조리실, 식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층   | 사무실, 상담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층   | 프로그램실, 휴게실, 자원봉사자실, 간호사실, 물리치료실, 특별실 |
| 3층   | 침실 4, 화장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층   | 침실 4, 화장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층   | 침실 4, 화장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층   | 침실 4, 화장실 2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층   | 산책로 정원, 세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♣. 요양원 현황

#### ◆종사자 근무체계 (2025. 1월 기준 요양원 현황)

| 시설장 | 사회복지사 | 간호조무사 | 물리치료사 | 요양보호사 | 위생원 | 조리원 | 관리인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
| 1   | 2     | 2     | 1     | 17    | 1   | 2   | 1   |

♣. 시설 보험

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시설배상책임보험 | 2025년06월10일~2026년06월10일 | 한화손해보험   |
| 화재보험     | 2024년09월13일~2025년09월13일 | KB손해보험   |
| 승강기보험    | 2024년08월16일~2025년08월16일 | 현대해상화재보험 |

♣. 2025년 시설 입소 비용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 1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4,5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인당 1일 시설수가<br>(20%본인부담금) |                | 90,450<br>(18,090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3,910<br>(16,782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9,240<br>(15,84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월 본인부담금<br>(30일 기준)       | (20%)<br>일반수급자 | 506,520(28일)<br>542,700(30일)<br>560,790(31일) | 469,890(28일)<br>503,460(30일)<br>520,240(31일) | 443,740 (28일)<br>475,440 (30일)<br>491,280 (31일)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12%)<br>감경대상자 | 1일=10,854원<br>325,620 (30일)                  | 1일=10,069원<br>302,070 (30일)                  | 1일=9,508원<br>285,260 (30일)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8%)<br>감경대상자  | 1일=7,236원<br>217,080 (30일)                   | 1일=6,712원<br>201,380 (30일)                   | 1일=6,339원<br>190,170 (30일)                      |
| 비급여                       | 식대             | 1일 8,100원<br>(끼니 당 2,700원)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일 기준 식·간식<br>대=243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간식비            | 1일 1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일 30,000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♣. 찾아오시는 길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▷▶ 대중교통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*버스이용<br>- 일반버스: 2, 14-1, 35, 760, 760-1<br>- 좌석버스: 103<br>- 마을버스: 551,586<br>- 시외버스: 88(박촌↔서울고속터미널)<br>- 삼화고속: 서울역↔산곡동 | *지하철 이용<br>인천1호선지하철:갈산역 하차(도보15분거리)<br>-지하철7호선: 산곡역 하차(도보17분)<br>2.자가용이용<br>-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42번길50<br>3.주차시설현황<br>- 건물뒤 주차장 4대 주차 가능 |
| ▷▶ 주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요양원 건물 뒷편 주차4대 시설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♣. 운영규정 개요

### 1. 입소계약

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등을명확히 하기위하여급여개시전에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2. 계약기간

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.

### 3. 계약해지

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

### 4. 이용료

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,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.

### 5.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

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변경 시와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변경 시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변경할 수 있다.

### 6. 시설물 사용

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대해서는 원상 복귀해야 한다.

### 7. 시설급여

수급자를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건강/케어정서기능 유지, 향상을 위한 서비스 및 교육, 훈련 등을 제공한다.

### 8. 의료서비스

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다.

### 9. 특별보호

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안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### 10. 배상책임

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중에입소자의 생명, 신체,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한다. 다만,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### 11.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
신원인수인은 입소어르신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'질 높은 서비스'와 '시설의 상황을 보고 받을 수 있는 권리' 등을 갖고, '입소비용납부'와 '어르신 인적사항변경 시 통보', '필요시대리인 선정', 병원에 입원시계약서에서정한 제반 사항에 관한 책임', 그리고 '기타 시설의 규칙 준수 의무' 등을 이행해야 한다.

## ♣. 시설급여 평가 결과

| 2021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정기평가 E (미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급여종류 : 시설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○ 대분류 영역별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대분류영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관 운영 | 환경 및 안전 | 수급자 권리보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급여제공 과정 | 급여제공 결과 |
| 별 개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★★★★ | ★★★★★   | ★★★★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★★★★★   | ★★★★★   |
| 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1점   | 94점     | 75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7점     | 93점     |
| ▶ 별개수 : 환산점수 40점부터 50점 미만까지는 0.5개(★☆☆☆☆) 부여,<br>50점부터 90점까지는 5점 간격으로 최대 5개(★★★★★) 부여,<br>40점 미만은 별개수는 표시하지 않고 환산점수만 표시<br>▶ 점수 : 대분류별 점수에 환산점수(백분비율)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(소수점이하 표기하지 않음)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소나무요양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|         |

## ♣.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개

### 1.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 어줌으로써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
### 2.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

#### ① 적용대상

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.(법 제7조제3항)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.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경우 건강보험 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(법 제12조)

#### ② 장기요양인정
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(수급권)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 라고 합니다.

#### ③ 장기요양인정절차

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 → 공단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→ 등급판정위원회 에서 등급판정 → 결과 통지(등급 인정되면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).

※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: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

### 3.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

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,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.

#### ② 본인부담금
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(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-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## ♣. 입소절차



## ♣️ 소나무요양의 특징

※도심 내 주거지역에 위치함으로서 어르신들의 입소에 대한 두려움과 소외감 완화  
인천 부평구 소재지의 노인요양시설로 가족과의 접근성이 좋음  
대중교통의 원활한 지리적 위치로 가족 및 지역사회 자원의 접근성 확보

※어르신들의 심리적 요인뿐만아니라 안전성까지 고려한 내부설계로 정서적 안정감 극대화  
집과 같은 생활 구조로 대규모 단체 생활이 아닌 소규모 가족형 분위기가 이루어져  
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,  
각 침실마다 화장실이 붙어있어 불편감을 빠르게 해소하거나 이동 시 어려움 해소

※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 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 보전 장기근속 장기요양요원에  
의해 제공되는 질높은 요양서비스

장기근속 간호조무사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 등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의 서비스  
응급상황발생 시 주변 대형병원 의료기관과 신속한 연계  
자동차로 5~15분 거리에 세림병원, 한림병원, 세종병원 위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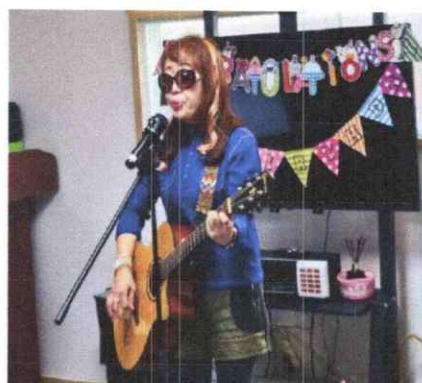
 세림병원  
Seirim General Hospital



※독자적 휴식공간인 하늘공원에 텃밭, 정원시설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정서함양



♣️ 소나무요양의 우수사례



★~민병용예술단 공연~★



★~이미용 서비스~★



★~정서지원 및 상담~★

## ♣. 자원봉사 안내



| 봉사분야  | 봉사내용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정서지원  | 말벗, 산책, 프로그램 진행       |
| 의료봉사  | 한방진료, 수지침             |
| 이미용봉사 | 목욕, 마사지, 머리커트, 손발톱 정리 |
| 프로그램  | 행사지원, 노래, 레크레이션       |

→자원봉사 신청은 기관전화 032) 529-0085

## ♣. 후원 안내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° 후원종류 | 정기후원<br>매월 일정금액을 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지정후원<br>매월 비정기 금액을<br>후원 | 물품후원<br>생활용품,간식,식품등을<br>후원 |
| ° 후원방법 | · 직접내방 또는 인터넷<br>뱅킹으로 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무통장 입금-요양원<br>후원계좌로 입금  | · 요양원 방문해서 납부              |
| ° 후원계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° 후원혜택 | 기부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24조,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해<br>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♣. 코로나 대응 현황

| 구분 \ 단계   |      | 생활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유행단계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전국유행단계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|      | 1단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5단계    | 2단계                   | 2.5단계      | 3단계                     |
| 상 황       |      | 생활 속 거리두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역적 유행개시 | 지역 유행 급속 전파, 전국적 확산개시 | 전국적 유행 본격화 | 전국적 대유행                 |
| 생활시설 면회   |      | 비접촉 면회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면회 금지                   |
| 이용자·자원봉사자 |      | 자원봉사자·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<br>(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인 방문 허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이용 시설 운영  | 운영   | 정상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운영 중단 권고<br>※긴급돌봄서비스 시행 |
|           | 주의사항 | 1) 이용시설 차량내 손소독제 구비 및 승차·하차시 손소독제 사용<br>2) 시설 이용시에는 행동장애 및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마스크 착용<br>3) 이용시설에서 프로그램 운영시 4㎡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※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

▶ 제1단계(억제단계):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운영

①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하고 비대면 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-사전예약제권장

②생활시설은 외출·외박 제한적 가능,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

▶ 제2단계(지역유행단계):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 ①신체활동 제한,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 예약제전환

▶ 제3단계(권역유행단계): 이용전원의 50% 이하(최대100인) 운영 ①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전 시설 시간제-사전예약제원칙 ②생활시설은 외출·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

▶ 제4단계(대유행단계): 이용전원의 50% 이하 운영

①지자체판단하에인근의 확진자현황, 감염 가능성, 방역조치,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축소 또는 중지여부를 결정 ②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

#### ※코로나 감염병관리책임자

①건강방역관리책임자: 시설장 문명숙

②직원관리전담자: 간호조무사 홍금진, 박미정

③격리실: 2층 특별침실



보건복지부



노인보호전문기관

어르신의 **행복**을 지켜드리는 번호,  
기억해주세요

노인학대신고·상담전화

**1577-1389**

또는 **129**



####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

-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.
-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.
-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.
-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.
-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.
-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.
-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.

####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

-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- 다툼,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.
-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.
-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.
-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.
-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.
-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.